

제 406 호

1973.10. 4.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61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이... 인공...
...
...
...
...

- ◎ 조 례
제 797 호 서울특별시 한미친선협회의회설치조례..... 3
- ◎ 훈 령
제 375 호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비대책
심의회규정..... 6
- ◎ 고 시
제 155 호 도시계획사업 (국민 학교) 시행허가..... 8
제 158 호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설변경..... 13
- ◎ 공 고
제 165 호 을중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합격자발표..... 14
제 188 호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준공..... 21
- ◎ 사 령 21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3년 10월 2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797 호

서울특별시 한미친선
협의회설치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주한 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 촉진 및 우의증진으로 상호협조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본청에 서울특별시한미친선협의회 (이하 "시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군병영이 주둔하고 있는 구에 그 구의 명칭을 붙인 한미친선협의회 (이하 "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 3 조 (기능) ①시협의회는 주한 미군과 지역 사회간의 공동 관심

사와 양측에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반사항 및 구협의회에서 전의된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의 이해 협조로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조정하며 제기된 문제를 양측의 합의로서 해결한다. ②전항의 공동 관심사는 아래와 같다.

1.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接客업소의 서비스개선, 내외시설개선 및 위생감독
2. 성병 보균자 및 접대부의 선도
3. 마약의 소지 및 판매단속
4. 미군표 거래밀수 및 미군수불자의 압거래 단속
5. 주한미군 기관에 종사하는 한국 고용인과의 노사분규 조정
6. 기타 상호간의 권익의 침해 및 친선의 저해요소 제거

제 4 조 (구성 및 위원위, 해축)

①협의회의 한국측 구성원은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내지 7인 및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시협의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제 1부시장 (구협의회는 구청장) 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기관의 대표 또는 구성원중에서 위촉

하고 자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 1. 사법기관(검찰, 경찰및세관)
- 2. 노동행정기관
- 3. 보건위생기관
- 4. 시자문위원회 또는 개발위원회
- 5. 정보기관
- 6. 관광업체유종 및 요식업협회
- 7. 업태부조합(협회)
- 8. 기타 유관기관 또는 시민대표

③위원장은 위원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직을 사임하게 하고 즉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때
- 2. 타기관으로 전출되었을 때
- 3. 회의참석이 미온적이고 협의회 운영에 소극적일 때
- 4. 한미친선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러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 5 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

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며 회의의 안전을 상호합의하고 토의한다.

③자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에 출석하되 발언할 수 없으며 협의회외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6 조(분임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회의된 사항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분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분임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의 수는 2 내지 3인으로 한다.

③구협의회에서 해결되지 못하여 전의된 사항은 분임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

④분임협의회는 수임받은 사안이 완결되었을때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제 7 조 (회 의) ① 협의회는 매월 1 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개최일은 양측의 협의로 정하며 회의는 원활한 의사교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이어야 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측의 협의가 있을 때에는 정기회의의 개최를 생략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제 8 조 (회 의 주 관) ① 정기회의는 상호교대로 타방위원을 초청하여 개최하되 초청한 기관이 주관한다. 다만 전조제 1 항 단서의 경우에는 요구기관에서 주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관기관은 늦어도 회의 개최 5 일전에 타방대표에게 아래 사항이 기재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일시
2. 회의개최장소
3. 부의안건 또는 개최하고자 하

는 사유

4.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기관 및 대표명
 ③ 제 6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 협의회는 양측의 사전 협의를 거쳐 회의일시와 장소를 따로 지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 9 조 (협 의 회 해 산) 주한미군이 이동하거나 병영이 폐쇄되는 때는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제 10 조 (참 고 인 의 협 의 회 출 석)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의된 안전에 관련되는 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발언이나 참고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1 조 (미 결 사 안 의 처 리) 협의회에서 합의되지 못한 사안은 시험의회는 한미합동위원회에, 구협의회는 시험의회에 각각 건의한다.

제 12 조 (보 고) ① 시험의회의 위원장은 아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구협의회위원장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 및 구협의회 회의개최상황
2.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해산사항
3.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불상사나 양측의 친선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사항

4. 기타 중앙부처 또는 상급기관
의 지원 또는 조정이 필요하거
나 참고될 사항

②제 1 항제 1 호의 보고는 전회분을
회의후 5일까지 제 2 호와 제 4 호
의 보고는 즉시 각각 서면보고하
고 제 3 호의 보고는 지휘 보고로
한다.

제 13 조 (기타사항)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다른 사항은 협의
회의 협의를 거쳐 따로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위원회 폐지) 이 조례 공
포당시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각
종 한미친선조직은 이 조례에 의하
여 구성되는 위원회에 폐지 통합
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 정리대책심의
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973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 서울특별시훈령제 375 호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
정리대책심의회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택개량사업과 무허가건물의 합리
적인 정리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리대책심의회
(이하 ' 심의회 ' 라 한다) 를 두
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직무) ① 심의회는 다음 사
항을 심의한다.

1. 기존무허가건물의 성리에 관한
기본계획
2. 현금 보조천거 및 이주정착에
관한 사항
3. 철거민의 구호에 관한 사항
4. 주택개량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개량지구 및 정착지구내의 도시
경관 조성에 관한사항

6. 사업추진상의 분계점의 분석과
그대책에 관한사항

7.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3 조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
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주택국장이 되고 위원은
주택행정과장, 단속과장, 개량 1 과장,
개량 2 과장, 주택건설과장, 도시계획과
장, 도시행정과장, 판매과장, 녹지과장
구획정리 1과장, 시설관리과장, 사회과
장, 급수과장 및 시정개발담당관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제 4 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회 회무를 통리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
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회의의소집과의사) ①심의회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②회의는 지명된 위원 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위원장은 회의개최 2일전에 제 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지
명하고 일시, 장소, 안전등을 정하여
참석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보고) ①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고결과 채택된 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7 조 (서무)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간사 2인과 서기 1 인을
둔다.

②간사는 개량 1 과 계획계장과, 개량
2 과 관리계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
국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
명한다.

제 8 조 (시행세칙) 심의회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 ① 이규정은 1973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서울특별시규정 제 309 호 (70.9.1) 서울특별시무허가건축물 대책위원회 규정은 이규정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55 호

도시계획사업(국민학교)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제 138 (73.8.17) 호로 결정 및 변경고지된 당시 도시계획사업인 서울동봉천 국민학교외 4 개교 (명덕국교, 망원국교, 신우이국교, 신도림국교) 종합시설의 사업시행을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를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다.

1973. 9. 25.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92-9외 13 필지
- 나. 서울특별시 도봉구 월계동 470 외 7 필지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266-10 외 6 필지

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363-2 외 3 필지

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도림동 741-3 외 13 필지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국민학교 종합시설사업

가. 동봉천 국민학교

나. 명덕 국민학교

다. 망원 국민학교

라. 신우이 국민학교

마. 신도림 국민학교

3.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4. 사업착수 준공예정년 월일 : 가. 착수 : 1973. 12. 31

나. 준공예정일 : 1973. 12. 31.

(착공일로부터 4개월간)

5.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

6. 수용토는 사용할토지 또는 건물조서 지번, 지목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별첨)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지번, 지목, 소유권이 외의 권리 명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판악구 봉천동	692 - 8	대	367 평	유봉열	근저당, 지상권설
"	692 - 9	대	516 평	"	"
"	692 - 10	대	48 평	김재만	
"	693 - 3	합	626평, 중 400 평	이청재	
"	694 - 3	전	390 평	이원근	가 등 기
"	694 - 9	전	211 평	이청재	
"	695 - 1	전	324평, 중 294평	이명재	
"	695 - 3	전	158평중, 128평	이정록	가 등 기
"	695 - 4	전	361평중, 191평	이명재	
"	695 - 9	전	167평중, 137평	이정록	가 등 기
"	696 - 1	전	425평중, 333평	윤이복	
"	697 - 1	전	105평중, 70평	이봉규	
"	697 - 2	전	43평중, 23평	이원근	
도봉구 월계동	470 (구거)	답(구거)	92 1,311	최주영	
"	471 - 1	답	299 평	박점봉	
"	471 - 2	답	296 평	"	
"	471 - 3	답(구거)	299 평	"	
"	471 - 4	"	299 평중, 289	"	
"	471 - 5	"	299 평중, 149	"	
"	446	"	316 평중 90	이덕남	
"	475 - 1	답	954 평중, 150	이순임	예 고 등 기
마포구 망원동	266 - 10	대	423 평중, 130	김충현	근저당, 지상권설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비 고
마포구 망원동	266 - 11	대	605.7 평	김 용 직	
"	268	"	576.8 평	김 예 환	
"	267 - 5	"	657.3 평	임 용 반	
"	289 - 8	"	960.3 평중 580.3 평중	천 병 균	
"	3 - 174	"	253.3 평	박 효 녀	
		도로 부지 430 평			
도봉구 쌍문동	363 - 2	답	2,928 평중 2,390 평	서울시교육위원회	
"	361 - 1	"	340 평	"	
"	362 - 2	"	796 평중 651	"	
"	360 - 2	대	1,391 평중 352 평	곽 재 락	
영등포구 신도림동	741 - 3	대	30 평	이 분 영	
"	741 - 4	"	30 평	김 일 영	
"	741 - 5	"	30 평	김 주 영	
"	741 - 6	"	30 평	김 주 영	
"	741 - 12	대	157 평	신 현 보	
"	744 - 1	답	451 평중 438	이 갑 순	
"	747	"	963 평	박 광 우	
"	748 - 1	"	716 평중 385	안 광 호	
"	748 - 2	"	1,440 평	서울시교육위원회	
"	748 - 7	대	14 평	김 창 섭	가 등 기
"	748 - 9	"	41 평	"	"
"	748 - 10	"	43 평	"	
"	748 - 11	도	16 평	"	가 등 기
"	748 - 12	대	27 평	"	

2.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주소성명	관계인주소성명
관악구봉천동	692 - 8	대	367평	봉천동 705 유봉열	을지로 2가 175-1 국민은행
"	692 - 9	"	516 "	"	"
"	692 - 10	"	48 "	봉천동 692-10 김계만	"
"	693	답	400 "	봉천동 712 이청재	"
"	694 - 3	전	390 "	봉천동 118 이원근	봉천동 711 김도남
"	694 - 9	"	211 "	봉천동 712 이청재	"
"	695 - 1	"	294 "	봉천동 712 이명재	"
"	695 - 3	"	128 "	봉천동 712 이정목	봉천동 706 이정우
"	695 - 4	"	191 "	봉천동 721 이명재	"
"	695 - 9	"	127 "	봉천동 721 이정목	봉천동 706 이정우
"	696 - 1	"	333 "	봉천동 275 - 1 이길목	"
"	697 - 1	"	70 "	봉천동 697 이규	"
"	697 - 2	"	23 "	봉천동 3가 118 이원근	"
"		구거	92 "	"	"
도봉구월계동	470	답	1,311 "	장위동 33 최영	"
"	471 - 1	"	299 "	장위동 115 장박봉	"
"	471 - 2	"	296 "	"	"
"	471 - 3	"	299 "	"	"
"	471 - 4	"	289 "	"	"
"	471 - 5	"	149 "	"	"
"	476 -	"	90 "	장위동 36 이덕남	"
"	475 - 1	"	150 "	장위동 58-1 이남순	용산구청과동 3가 11-46 김태성
마포구망원동	266 - 10	대	130	성산동 254-2 김현	을지로 2가 175-1 국민은행
"	266 - 11	"	605.7	합정동 385-25 김용직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주소성명	관계인주소성명
마포구망원동	268	대	576.8	만리동2가 231-7 김예환	
"	267-5	"	657.3	미아동 473-70 입용관	
"	289-8	"	560.3	망원동 209 천빙관	
"	3-174	"	253.3	교동 141-16 박효녀	
"		도로	430		
도봉구쌍문동	363-2	답	2,928 ^{평중} 2,390 ^평	교육위원회	
"	361-1	"	340 ^평	"	
"	361-2	"	796 ^{평중} 651 ^평	"	
"	360-2	대	1,399 ^{평중} 352	수유동 290-23 곽재락	
영등포구신도림동	741-3	"	30 ^평	종로구 돈의동 99 이분영	
"	741-4	"	30 ^평	신도림동 892-3 김일영	
"	741-5	"	30 ^평	신길동 190-153 김주영	
"	741-6	"	30 ^평	"	
"	741-12	"	157 ^평	서대문구 부암동 132 신현보	
"	744-1	답	438 ^평	신도림동 734 이갑순	
"	747	"	963 ^평	대방동 411 박광우	
"	748-1	"	385 ^평	성수동 2가 14-2 안광호	
"	748-2	"	1,440 ^평	서울시교육위원회	
"	748-7	대	14 ^평	구로동 409-42 김창섭	구로동 724-22 곽주철
"	748-9	"	41 ^평	"	"
"	748-10	"	43 ^평	"	없음
"	748-11	도	16 ^평	"	구로동 724-22 곽주철
"	748-12	대	27 ^평	"	"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58호

·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설변경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건설부 고시 제

제 123 호 (73.4.4) 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

2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

1973 . 10 . 1 .

서울특별시장

가. 가로 변경 조서

구 분	등 급	번호	류별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변경 전	소로	8-1	2류	8미터	74	산 151- 서측 8미터계획도로	단지하천 동측단지끝	
변경 후	"	"	"	"	"	"	"	위치변경
변경 전	소로	6-1	3류	6미터	233	산 1,518미터 도보하천서측	단지내 신상 부분통과동측끝	
변경 후	"	"	"	"	"	"	"	위치변경
변경 전	소로	6-2	3류	6미터	137	산 151 서측 하천 5미터계획도로	단지상부끝	
변경 후	"	"	"	"	"	"	"	위치변경
변경 전	소로	6-3	3류	6미터	137	단지중앙부분서측	단지중앙부분 동측끝	
변경 후	"	"	"	"	"	"	"	위치변경

나. 아동공원 변경 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신림아동공원	시내영등포구신림동산 151 지내	254	
변 경	"	시내관악구신림동산 151 지내 257	257	면적 변경 및 위치 변경

공 고

◎ 서울 특별시공고 제 165 호

을중 위험물 취급주임
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1. 73.9.30.자 당부에서 실시한

첨부 : 합격자 응시번호표 1부 . 끝 .

제 13 회 을중 위험물 취급주임

면허 자격시험 합격자 번호를 다음
과 같이 공고한다 .

1973. 10. 2

서울 특별시 장

합 격 자 번 호 (4 류)

2	35	74	124	165
4	36	77	125	172
7	38	79	127	173
9	39	80	128	174
11	40	84	131	175
13	41	85	132	176
15	42	87	133	178
17	43	89	134	181
18	45	90	135	183
19	48	92	136	184
20	49	93	141	186
21	51	94	143	191
23	52	100	146	196
24	55	101	151	197
25	56	105	154	199
26	60	106	155	201
30	65	110	159	204
31	66	111	160	208
33	72	116	163	209
34	73	123	164	

합 격 자 번 호 (4 류)

211	270	319	373	431
212	271	320	374	433
214	272	322	375	435
215	273	326	376	438
217	274	330	377	441
225	279	331	380	442
226	280	332	386	445
231	282	333	390	447
233	283	334	394	448
234	286	338	398	449
236	288	339	399	452
238	289	340	400	453
241	292	341	403	454
244	294	342	405	455
246	296	347	406	456
251	298	348	407	458
252	300	352	408	459
254	304	353	410	461
257	305	354	411	462
259	307	357	412	463
260	308	358	414	464
261	310	360	415	466
262	312	361	424	469
265	313	363	425	473
268	318	364	428	474

합 격 자 번 호 (4 류)				
476	533	580	619	665
478	535	581	621	666
480	537	582	622	667
481	538	583	623	668
482	539	587	624	671
486	541	588	626	675
487	543	589	628	676
488	544	590	630	677
489	547	591	631	681
497	549	592	632	688
500	553	594	634	689
501	555	595	637	691
502	559	596	638	693
503	565	597	639	700
504	566	599	642	701
508	569	600	643	703
509	570	601	644	710
510	571	605	650	712
513	572	606	653	714
520	573	607	655	716
521	574	608	656	718
522	575	612	659	721
526	577	614	660	724
527	578	615	661	725
530	579	617	663	730

합 격 자 번 호 (4 류)

736	782	840	899	973
738	785	841	907	974
739	786	844	911	975
740	788	845	912	982
741	789	847	913	983
742	790	850	914	984
746	794	851	915	987
747	796	855	916	988
748	798	856	921	990
749	799	859	926	991
750	800	861	933	993
751	801	862	939	994
756	802	863	943	995
757	803	864	944	999
758	811	869	948	1000
761	812	870	949	1002
765	815	871	950	1004
766	817	874	951	1005
769	820	881	952	1006
771	825	882	956	1007
774	826	887	958	1009
778	830	888	960	1011
779	832	889	964	1012
780	833	892	965	1013
781	836	896	971	1021

합 격 자 번 호 (4 류)

1026	1083	1161	1239	1304
1027	1085	1163	1242	1309
1028	1090	1164	1243	1311
1030	1091	1165	1246	1314
1034	1092	1166	1247	1316
1038	1097	1167	1249	1318
1041	1099	1172	1252	1319
1045	1101	1179	1255	1322
1046	1106	1189	1259	1323
1050	1110	1194	1263	1326
1051	1111	1196	1264	1327
1053	1113	1205	1267	1328
1054	1114	1210	1269	1331
1057	1117	1211	1272	1336
1059	1118	1213	1274	1338
1061	1126	1214	1275	1343
1063	1127	1216	1276	1347
1064	1128	1217	1279	1351
1068	1129	1218	1282	1353
1069	1130	1219	1285	1362
1074	1133	1223	1288	1378
1075	1135	1226	1290	1379
1076	1143	1227	1291	1380
1077	1154	1232	1299	1384
1078	1155	1236	1303	1387

합 격 자 번 호 (4 류)

1388	1461	1522	1600	1660
1389	1463	1523	1601	1664
1390	1465	1525	1602	1665
1392	1466	1526	1603	1666
1393	1468	1528	1604	1668
1394	1469	1530	1605	1674
1397	1472	1534	1607	1681
1409	1473	1535	1608	1686
1411	1474	1536	1609	1687
1412	1475	1538	1610	1688
1414	1476	1541	1612	1689
1415	1477	1543	1616	1694
1419	1478	1544	1617	1698
1422	1482	1545	1618	1701
1423	1484	1546	1619	1707
1425	1486	1547	1626	1710
1426	1487	1548	1627	1711
1428	1488	1552	1629	1712
1429	1490	1554	1630	1713
1431	1491	1555	1636	1716
1435	1492	1556	1637	1718
1436	1495	1557	1639	1719
1437	1497	1558	1640	1720
1438	1501	1563	1648	1722
1439	1503	1575	1653	1726
1451	1509	1579	1655	1731
1457	1517	1582	1657	1732
1460	1520	1599	1658	1733

1

합 격 자 번 호 (4 류)

1734	1757	1774	1817	1837
1735	1758	1775	1818	1840
1736	1759	1776	1819	1846
1737	1760	1781	1820	1847
1742	1762	1782	1821	1848
1743	1763	1784	1822	1850
1744	1764	1787	1823	1851
1745	1766	1794	1824	1853
1746	1767	1797	1825	1856
1747	1768	1809	1831	1857
1749	1771	1813	1832	1198
1750	1772	1814	1834	1201
1754	1773	1816	1835	1203

합 격 자 번 호 (1 류)

2 3

합 격 자 번 호 (2 류)

1 2 3 4

합 격 자 번 호 (3 류)

1 2 3 4

합 격 자 번 호 (5 류)

1

합 격 자 번 호 (6 류)

1 2 3 4

◎ 서울특별시 공고제 188 호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준공

- 1. 서울특별시고시제 9 호 (72.1.11) 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사업 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준공 을 도시계획법제 85 조제 1 항 및 제 46 조제 3 항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3. 9.29.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집행지 : 서울특별시관악구방배동 산 84 - 3. 4
- 2. 사업명 :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 3. 준공면적 : 9,104 평
- 4. 사업시행자 : 국군통합법무주택단지 주택조합장 박윤상
- 5. 사업기간 : 착공 : 72. 1.14. 준공예정일 : 73. 6.30.
- 6. 준공년월일 : 73. 9.
- 7. 준공도면 : 별첨도면 (생략)

사 령

◎ 1973. 9.22.

- 세 정 과 지방행정 주사보 김 정 근
- 세 정 과 지방행정 주사보 구 우 복
- 세 정 과 지방행정 주사보 조 회 열

시정개발담당관실에 근무를 명함.

- 세 정 과 지방행정 (업무과파견) 서 기 박 준 일

시정개발담당관실 (업무과파견)

근무를 명함.

- 세 정 과 지방행정 서 기 윤 근 현

시정개발담당관실에 근무를 명함.

- 세 정 과 지방행정 서 기 정 인 순

세 정 과 지방행정 서 기 황 광 치

시정개발담당관실에 근무를 명함.

세 정 과 지방행정 (휴직) 서 기 김 상 암

시정개발담당관실 (휴직) 에 근무를 명함.

세 정 과 지방행정 (업무과파견) 서 기 신 동 필

시정개발담당관실 (업무과파견)

에 근무를 명함.

◎ 1973. 9.28.

남 부 병 원 · 지 방 간 호 기 원 보 시 보 박 진 자

튼인 불출두로 인하여 73.9.

25 자 신규임용발령 (제 939 호)

을 동일자로 취소함.

◎ 1973. 9.29.

등대문구 지방지적
기 사 안 종 두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2호의 규정

에 의거하여 감봉3월에 처함.

영등포구 지방지적
양서출장소 기사보 송 오 북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2호에 규

정에 의거하여 감봉3월에 처함.

영등포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사 이 종 기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2호에 규

정에 의거하여 감봉3월에 처함.

등대문구 지방지적
기 원 김 의 구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2호에 규

정에 의거하여 감봉6월에 처함.

한강건설 지방토목
사업소 기사 안 근 필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2호에 규

정에 의거하여 전책에 처함.

◎ 1973. 9.30.

주택건설과 조건부지방
전기기사보 공 증 식
지방전기기사보에 임함.

2 호봉을 급함.

주택건설과 근무를 명함,

◎ 1973.10. 1.

마포구 기계지원 신 경 호
73.8.28 원고 승 소판결에

의거 72.6.21 자 파면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 1973.10. 5.

전북고창군 지방농림 황 형 구
상내면 기사 보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농림지원에 임함.

6 호봉을 급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경북주사보 권 갑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4 호봉을 급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철도청 행정주사 박 중 회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2 호봉을 급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 1973.10.10.

경북건설국 지방토목 권 대 근
지역계획과 기사 보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토목기사보에 임함.

5 호봉을 급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